승객화물용 승강기 신규 교체공사

공사 일반 시방서 (현설용)

2022. 8.

국제백신연구소

1장. 일반사항

1.1. 적용범위

본 시방서는 "국제백신연구소 내 승객화물용 승강기 신규 교체공사"의 시방을 제시하며, 모든 공사 방법에 있어서는 시방서와 제출된 견적서 및 사업계획서(제안서), 건설산업기본법 및 승강기안전관리법 시행령, 동법 시행령, 동법시행규칙을 적용하여 시공한다.

1.2. 공사 개요

1) 공사명: 국제백신연구소 승객화물용 승강기 1대 신규 교체공사

2) 공사위치: 국제백신연구소 (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950동)

3) 공사기간 :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한다. (별도 협의에 의하나, 금년 2022년 12월 31까지 승강기사용승인검사 완료를 목표로 한다.)

4) 공사 항목 및 방법

❖ 승객화물용 승강기 교체

-현재 승객화물용 승강기 제원

- 제조사: 현대엘리베이터
- 형식/종류: 권상식/VVVF/승객화물용
- 운행구간: 지하1층~지상5층(총6개층)
- 적재하중: 2,000kg

-승객화물용 승강기 신규교체

- 기존 완,승객화물용 승강기에서 완,승객화물용 또는 일반 승객용 승강기로 신규교체로 한다(입찰업체 제안서)
- OEM방식의 신규설치는 불가한다.

1.3. 입찰 방식 및 입찰 참가자격

1) 본 공사는 건설총액입찰 공사로서,제한경쟁입찰(총액입찰)이다.

2) 입찰참가자격

-다음 각 「**아래항목**」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.

- [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]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승강기 안전관리법(2018. 3.27 개정)제6조에 의한 승강기제조업에 등록한 업체
-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업체
-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에 등록한 업체
- 승강기 제작 및 시공을 포함하여 계약기간내 인증 및 모든 법정검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.
-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

*현장설명 참가로 공사가능여부 확인, 입찰가격 산정 등 사전 점검필요.

1.4. 대금 지급 방법 (별도 협의)

당 연구소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

2장. 특기사항

2.1. 승강기 신규 교체공사 (제안서 제출)

1) 본 공사는, 관계법령에 따라 엘리베이터 일반시방서의 설계지침의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제 규정 등과 상기의 설명서 기준에 의하여 정확히 시공에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안서 및 시방을 제출하여야 한다.
2) 본 시방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, 동법 시행령, 동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상의 품질로 제작하여야한다.
3)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제품 또는 동등 이상이여야 한다.
4) 본 승강기 설치공사전 설치도면, 제작공정표, 승강기 디자인(색상, 재질 등)에 대하여 발주처에 승인을 얻은 후 제작에 착수 하도록 한다.
5) 엘리베이터관련 보안장비(CCTV 및 카드리더기)의 케이블은 공급자가 포설하여야 하며(발주처와 별도협의), 보안장비는 발주처가 별도 공사한다.
6) 본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인 판단의 적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공여부는 발주처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.
7) 본 승강기 신규 교체 시 기존에 있는 모든 부품은 재활용을 할 수 없다(단 건물구조체에 부착되어있거나 또는 철거가 불가할 시 발주처와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)

8) 승강기 제조업체는 국내에 직접생산 공장 및 테스트 타워를 보유하여야 하며, 제품에 대한 우수한 품질과 제작품 조달에 빠르게 대응하여야 한다.

9) 본 승강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업체는 긴급 상황 시 30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 대응할 수 있는 유지보수 체제를 갖춘 회사이어야 하고, 설치 완료 후 애프터서비스를 시행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.

2.2. 안전 및 환경 관리

1) 국내/외 관련된 시방서 등에 준하여 공사 관리한다.

2) 안전관리사항

- 공급자는 당 현장의 관리규약을 준수하고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한다.
- 공사 시작전 작업자의 안전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안전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.
- 공급자는 안전관리자를 필히 선임하여야 하고 승강기 교체공사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- 화재의 위험이 있는 곳은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함은 물론 작업 중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 교체공사 중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.(개구부에는 안전보호 장치를 반드시 설치한다)
- 공사 중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손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적절한 보양 방법 등을 실시한다. 본 공사로 인하여 시설물에 훼손이 발생하였을 경우, 신속히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- 공급자는 소음 및 분진발생 작업 시 사전에 발주처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-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관련법규에 따라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

2.3. 책임한계

- 본 시방서에 불명확한 내용이 있을 경우 시공사는 입찰(계약)전에 발주처에게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, 계약 후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.
- 승강기를 제작, 설치함에 있어서 기능 및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, 공급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.
- 승강기 설치에 관한 시방서 및 도면상 불명확한 부분 중 기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함과 동시에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.

2.4. 준공검사

공급자는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발주자에게 준공계(준공검사원, 공사 전/중/후 전 과정 사진대지 2부 및 기타서류)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2.5. 품질보증서

1) 수급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며, 내용에는 품질보증기간, 품질보증내용, 업체명, 및 주소 전화번호 등에 관한것을 기재하여 제출한다.

2.6. 승강기 검사 및 인수인계 사항

1) 공급자는 승강기를 교체.설치 완료한 경우 발주처를 대신하여 "승강기 안전관리법"에 의한 검사를 승강기 검사기관으로부터 받고 합격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.

   공급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정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흘 받아 합격, 완료 승인을 득한 후, 「**다음항목**」의 제출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발주자의 서명을 받고 승강기를 발주자에게 인계한다.

   「**다음항목**」

   -검사합격증명서 원본

   -품질보증서 2부

   -승강기 설치도면(건축.전기.설비 포함)

   -승강기 운전요령서 및 긴급대처요령서

   -기타 본 연구소에서 정한 관계서류

3장. 기타 (2023년 별도 예정 공사)

3.1.공사범위

1) 승객용 승강기 2대 (승객용 및 장애인용) 신규교체 (2023 년 교체 예정) 가 예정되어 있으니 아래 서류도 입찰 참가시 제출 요망

-승객용 승강기 2대 견적서 제출 (검토 및 참고 자료 활용)

* 옵션 아이템 포함하여 제출 할 것 (에어컨, 내부 모니터 및 기타)

2) 현재 승객용 승강기 제원

-제조사: 현대엘리베이터

-수량: 2대

-형식/종류: 권상식/VVVF/승객용(2호기) 및 승객 장애인용(3호기)

-운행구간: 지하1층~지상4층(총5개층)

-적재하중: 1,000kg